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9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 대여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모차 이용료 무료 (안 제7조제1항 별표)

나. 유모차 대여기간 명확화 (안 제7조제1항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10. 12. ~ 11. 1.)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유모차 이용료 및 대여기간 등(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대여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
이 용 료	무료
대여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 ※ 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u>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u>는 [별표]를 따른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p> <p>③ ~ ⑤ (생략)</p> <p>[별표] ○ 유모차 <u>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u> (제7조 관련)</p>	<p>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 ----- <u>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u>은 별표를 따른다.</p> <p>② ----- ----- ----- <u>별표</u>를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 ○ 유모차 <u>이용료 및 대여기간 등</u>(제7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내 용</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이용료/1대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00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여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td> <td style="text-align: center;">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 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u>40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비 고	<u>이용료/1대당</u>	<u>6,000원</u>	<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	대여기간	<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 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	<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	<u>400원</u>	<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55%;">내 용</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삭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대여대상</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이용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무료</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여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 <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삭제>	<u>대여대상</u>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		<u>이용료</u>	<u>무료</u>		대여기간	<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삭제>		
구 분	내 용	비 고																										
<u>이용료/1대당</u>	<u>6,000원</u>	<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																										
대여기간	<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 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																										
<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	<u>400원</u>	<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																										
구 분	내 용	<삭제>																										
<u>대여대상</u>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																											
<u>이용료</u>	<u>무료</u>																											
대여기간	<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p>○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입 시기</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유모차 분실</td> <td>1년 이하</td> <td>구입가격의 90%</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하</td> <td>구입가격의 70%</td> </tr> <tr> <td>2년 초과</td> <td>구입가격의 50%</td> </tr> <tr> <td>구성품 분실</td> <td>불문</td> <td>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현행과 같음>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p>○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제7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td> <td>없음</td> </tr> <tr> <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td> <td>소요비용의 50%</td> </tr> <tr> <td>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td> <td>5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현행과 같음>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